

구미시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안

--	--

: 2006. 3. .

:

1. 제안이유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04. 10. 22제정되어 '05. 3.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에 의한 후속 조치로 인정시장과 시장상인회의 등록을 위한 준칙이 시달되어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시장상인회의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하는 「구미시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시설현대화사업 및 경영현대화 보조사업 절차(안 제6조)
- 인정시장의 구역의 범위(안 제10조)
-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안 제22조)
- 시설현대화시설물 위탁관리(안 제23조)
- 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안 제25조)
- 임시시장의 개설(안 제36조)

3. 참고사항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및 제2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6조
- 「유통산업발전법」

구미시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법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법제6조 및 영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영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래시장”이라 함은 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2. “인정시장”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래시장 인정서”를 교부한 시장을 말한다.
3. “상인회”라 함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구역 내에 있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시장에게 등록된 조직을 말한다.
4.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시장안과 밖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기능) 상인회는 법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제6조 및 영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를 위해 정부와 시에서 지원 또는 보조하는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사업의 수행
2. 법제11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경영 현대화 촉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또는 보조하는 상거래 현대화 및 공동사업 등 경영현대화 사업의 수행
3. 기타 시행규칙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에 포함된 사업내용

제4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다.

1.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의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2. 상인회가 스스로 조직을 해산한 경우

②시장은 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사업 경비 지원) ①시장은 상인회가 법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사업시행은 시장이 직접 하거나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 상인회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보조사업 절차) ①시설현대화사업 내지 경영현대화사업은 상인회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며, 주차장·화장실 등의 공사와 같은 공공재산적 성격의 사업은 시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②상인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보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상인회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상인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항에 대하여 수정·권고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집행과 결산) ①시장은 공동사업 및 보조사업비를 상인회가 직접 시행하도록 지원할 경우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 검토·협의 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상인회는 사업집행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와 서류)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상인회 조직에 관한 서류(회원명부, 정관 등)
2. 관할구역(시장) 배치도
3. 사업수행에 관한 서류
4. 자체 사업계획서
5.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서류
6. 보조금 집행내역서 및 그 증빙서류
7. 각종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8. 기타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보고) 상인회는 시장의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상인회의 총회 개최시 토의사항
2. 직접사업 수행시 시장의 사업진행사항 요구 자료
3. 사업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현황 자료
4. 기타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인정시장 구역의 범위) ①시장이 영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 인정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인정시장은 점포 수 50개 이상인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지하도에 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점포가 점유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3.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 홈페이지 및 지역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인정시장의 시설과 부지) ①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 내지 마목 및 동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영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인정시장의 면적에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시장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기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3조(인정시장의 관리) ①시장은 “재래시장 인정서”를 교부한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관리자는 상인회대표자나 상인회에서 추천한 자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상인회 회원간의 의견 조정
3. 청소, 화재예방, 편의시설의 유지·보수 등 시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4.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④시장은 인정시장에 대하여 법에 의한 재래시장활성화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인정시장의 등록 취소) ①시장은 영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정시장의 등록을 취소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근거하여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리) ①편의시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상인회와 협약에 의하여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 편의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시장은 편의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시장은 인정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편의시설의 제거를 요구한 경우, 시장이 판단하여 그 편의

시설을 제거할 수 있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관리와 책임) ①시장관리자는 당해 시장의 공용부분에 대하여 수시로 청소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시장관리자는 「소방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화관리책임자 또는 자율소방대를 두는 등 화재진압 협조, 소방도로 확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시장관리자는 시장상인 또는 시장을 이용하는 자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제거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장관리자의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⑤시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지명한 경우에는 시장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건축물이 공유물인 경우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의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을 등기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부속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영업권의 승계) 시장은 공설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 시장안의 점포 등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이 사업이 완료된 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선하여 입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경비의 부과) ①상인회는 인정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상인회 회원으로부터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은 편의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질서유지) ①시장은 시장관리자가 시장상인의 동의를 얻어 편의시설의 관리를 위한 관리요원 또는 경비요원을 두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장관리자가 인정시장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 제출)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대하여 구역을 표시한 도면, 시장의 면적, 상인명단, 점포 수, 편의시설 등에 관한 현황자료를 상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시장의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시설물의 소유권) ①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한 시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시행 당시 당해 시장의 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종전의 시장부지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시장건물·주차장·화장실·고객센터·물류시설·비가리개 등 공동시설을 말한다.)

2. 인정시장의 구역안과 밖에서 시장소유가 아니었으나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로서 도로, 토지 및 건축물

②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한 상인회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제3조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구역안과 밖에서 보조사업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시설물(다만, 사도가 아닌 도로와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등 독립된 토지안의 시설물은 예외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은 보조사업자가 사업비를 부담비율에 의하여 부담

하고 사업을 직접 수행한 경우에 한하며, 그 외 단서와 사업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장과 협약으로 정한다.

제23조(위탁관리) ①시장은 시설현대화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시장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를 상인회·시장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이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입점상인 및 시장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또는 비용의 징수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 처분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사용료 및 비용의 징수 등) ①시장 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시설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1. 공용의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2. 청소비

3.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4. 인정시장의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5. 기타 상인회가 정한 경비 등

제26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한다.

②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 및 운영현황을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 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그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제28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시장은 상인회 등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준용)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영과 「지방재정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주차장법」·「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사업시행구역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시장은 신청인이 영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시행구역 추천신청 서류에 대하여 관계법령, 사업의 타당성, 입점상인 대책 및 이해관계의 조정 등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 및 조정하기 위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추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요건 및 운영방법 등 그 밖의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사업시행구역의 추천 등) ①시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추천신청 서류를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부의하기 전에 미리 영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청회 또는 서면을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구역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정리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과 함께 위원회의 검토 및 조정을 거쳐 사업시행구역 선정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32조(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①영제10조제2항제2호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제14조 및 제15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은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

2.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3.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33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 및 권리의무 승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제34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법제22조제2항 및 영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합 인가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정관
2. 조합원 명부(조합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3. 토지 등의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 부 포함)
5. 조합장 선임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6.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7.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9. 건축계획(건축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판매시설 m², 주거시설 m², 업무시설 m², 기타시설 m²), 매장면적(도·소매업 매장 m², 용역업

매장 m², 공동사용시설 면적 m²)

제35조(사업의 시행) ①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조합설립인가·도시관리계획의 결정·건축허가·교통영향평가 등 관련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최종 사업계획이 법제4조 규정에 의한 지역시장육성계획과 다른 경우 그 계획을 변경하여 반영하는 등 정비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6조(임시시장의 개설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 기간에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시장에게 국유지 또는 공유지(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국·공유지의 사용을 요청 받은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가 국·공유지의 사용을 허가받아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임시시장에 입점할 수 있는 상인은 사업시행구역 추천신청서가 제출된 시점에 당해 시장에서 실제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으로서 희망자로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임시시장을 개설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입점상인 연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 및 입점상인은 국·공유지에 개설한 임시시장의 점포에 대하여 매매·양도·임대를 불허한다.
4. 사업시행자는 임시시장을 정비사업의 공사기간에 한하여 운영하되, 정비사업 완료와 함께 폐쇄하고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37조(보고 및 관리 등) ①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매년 반기(1월, 7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완료한 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과 관리자 신고를 필한 후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증 및 대규모점포 관리자 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정비사업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완료보고를 이행한 경우 당해 시장을 「유통산업발전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시장)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자 료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래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나.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 안에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곳

2. "시장정비사업"이라 함은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이하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에 속하는 토지나 건축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시장정비사업조합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장을 재개발·재건축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시장정비사업조합"이라 함은 사업시행구역에 속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4.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5. "복합형 상가건물"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을 갖추고 그 밖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 (지역시장육성계획의 수립)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

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시장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사업·시장환경 개선사업 및 공설시장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연차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장의 경영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별 또는 인접지역시장을 연계한 중장기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한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중소기업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④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환경개선사업 중 주차장을 설치·개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사업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

2. 시장환경개선사업 : 시장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비 가리개, 주차장, 화장실, 진입도로, 전기·가스·화재 등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3. 공설시장현대화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신축 또는 증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대상 및 한도,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및 시장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등의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공동사업의 활성화)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인이 시장의 활성화 및 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상표·포장지의 개발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관한 사업
2. 공동구매 및 공동물류·배송체계의 구축
3. 공동상품권의 발행 및 공동판매장의 설치 등 판로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판로촉진과 홍보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상품의 판매 촉진과 시장의 홍보를 위한 행사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경영교육 및 전문가 양성)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또는 시장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자문 및 시장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연구소·법인 및 단체 등을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장상인업종전환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업종을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업종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기회의 제공
2. 새로운 사업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지도·상담

제16조 (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안에 있는 빈 점포를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다음 각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4.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5. 상거래현대화 시범점포를 위한 장소 등

제21조 (임점상인에 대한 대책) ①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임점상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기간에 임차상인 등을 포함한 임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의 마련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의 마련이 곤란한 경우에는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구역의 선정·공고 당시의 임차상인 등 임점상인에 대한 시장정비사업완료 후의 입점우선권 부여 또는 임대료할인 등에 관한 사항

②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점상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 등 임점상인에 대한 대책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④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비용 지원의 중단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무주택자인 입점상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주택을 우선하여 공급(1세대 1주택에 한한다)할 수 있다.

제22조 (시장정비사업의 동의 등에 관한 특례)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소유자 총수(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은 1인으로 본다. 이하 같다) 및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집합건물인 시장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각자를 1인의 소유자로 본다. 이하 같다)의 각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을 위한 추천을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여 등기를 마친 때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가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시장의 철거계획서 및 건설될 건축물의 관리처분계획서(당해 건축물을 건설할 대지의 환지처분계획을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분양처분으로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본다.

⑤시·도지사가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한 시장을 정비함에 있어서 복합형상가건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시장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⑥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을 각각 준용한다.

제40조 (시장상인회) ①시장 안에서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는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다.

②상인회는 시설·경영 현대화 및 공동사업을 수행한다.

③상인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설립을 등록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상인회의 운영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회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상인회의 설립과 운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인정시장의 기준) ①법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말한다.

1. 일정구역 안의 장소·건물 또는 지하에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소유자

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래시장의 인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그 때까지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또는 제9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2. 해당 지역이 법 제2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제5조 (인정시장의 운영·관리)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장의 시설기준·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정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제6조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개선사업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외부 및 내부구조의 변경, 건축물 안전의 보장 등
2. 시장환경개선사업 : 시장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 등
 - 가. 주차장, 진입도로, 시장 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나. 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교육장소 등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 다.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라. 시장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3. 공설시장현대화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건축물·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지원예산의 규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과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및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 한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③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시장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르는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④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10조 (사업시행구역의 추천신청 절차)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구역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추천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시장현황에 관한 서류(시장의 명칭·소재지, 시장부지의 지목·지번·면적, 건물형태 및 연면적, 영업장 면적 등)

2. 재래시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 소유자의 동의 서류

4. 토지 등 소유자의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다음 각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시장정비사업계획서(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3이상이 동의하여 수립한 것을 말한다)

가.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할 건축물의 설계 개요

나. 시장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및 그 비용의 분담·조달 방안

다.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

6. 시장정비사업 완료 이후의 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의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토지 등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시장인 경우에 한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3. 시장정비사업조합

4.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제11조 (시장정비사업계획의 검토)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계획이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 및 시장정비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의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2. 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자금조달계획의 타당성 등 사업추진 가능 여부

4.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

5. 육성계획과의 일치 여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변경·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청한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정비사업계획의 공고, 공청회 개최 또는 서면을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토지 등 소유자, 시장개설자 및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과 인접지역을 포함한 경우에는 인접지역 토지 등의 소유자,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 등) 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 (시행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법, 이 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주택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규칙

제8조 (시장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해당 시장을 구역으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상인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며, 회원은 동일 시장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다른 상인회의 설립에 중복으로 동의하거나 회원이 될 수 없다.

1. 시장안의 전체 상인(1점포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2. 시장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3. 시장안의 전체 상인의 수가 1천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의 4분의 1 이상

③시장이 4동 이상의 상가건물(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건물에 한한다) 또는 4 이상의 구역(50개 이상의 점포가 있는 구역에 한한다)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갈음하여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각각 대표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상가건물 또는 구역을 대표하는 자는 해당 상가건물 또는 구역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상인회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인 명부
2. 창립총회 회의록
3. 규약(정관)
4. 사업계획서
5. 재산명세서

⑤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장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⑥상인회의 규약(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칭
2. 업무구역
3. 목적
4. 사업내용
5. 총회와 이사회
6. 임원선출방법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⑦중소기업청장은 상인회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규약(정관)을 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⑧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인회등록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⑩상인회의 등록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3.18 대통령령 18740호]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등을 위하여 사용

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 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 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 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

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 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 의사·동물병원·독서실·충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 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 소극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

다.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마권장외발매소·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라.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

다)

마.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바.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판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하며 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상점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제4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 바. 공항시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건축법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1995.1.5, 1996.12.30, 1997.12.13, 1999.2.8, 2002.2.4>

11. "道路"라 함은 步行 및 自動車通行이 가능한 너비 4미터이상의 道路(地形的 條件으로 自動車通行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道路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造 및 너비의 道路)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道路 또는 그 豫定道路를 말한다.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道路法·私道法 기타 關係法令에 의하여 新設 또는 變更에 관한 告示가 된 道路

나. 建築許可 또는 申告時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

다)이 그 位置를 지정·公告한 道路

②第1項第2號의2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用途는 다음 各號와 같이 구분하되, 각 用途에 속하는 建築物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신설 1999.2.8>

1. 單獨住宅
2. 共同住宅
3. 第1種 近隣生活施設
4. 第2種 近隣生活施設
5. 文化 및 集會施設
6. 販賣 및 營業施設

지방자치법

第95條 (事務의 委任등)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補助機關, 소속行政機關 또는 下部行政機關에 委任할 수 있다.<改正 1994.12.20>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의 일부를 管轄地方自治團體나 公共團體 또는 그 機關(事業所·出張所를 포함한다)에 委任 또는 委託할 수 있다.<改正 1994.12.20>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 또는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事務중 調査·檢査·檢定·管理業務 등 住民의 權利·義務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事務를 法人·團體 또는 그 機關이나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1994.12.20>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위임 또는 委託받은 事務의 일부를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委託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事務를 위임 또는 委託한 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1994.12.2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①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3.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18>

③제2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④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이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미리 협의하여 추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3.18>

제14조 (추진위원회의 기능)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2.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추진위원회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

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추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위원회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4.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④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한다.

- ⑤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 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 ⑥토지등소유자는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위원의 교체·해임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②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조합이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조합을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5.29 , 2005.3.18>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신청 및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 등) ①대규모점포개설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지역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다.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6조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신고)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관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입점상인의 현황
3. 정관 또는 자치규약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규모점포관리자확인서를 그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